


의정활동보고서



제310회 임시회(2019. 8. 21 ~ 9. 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덥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에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의 열망과 성원 속에 출범한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회는
다양한 정당 구조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의 기치 아래 사상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화합과 상생의 의회를 구현해왔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출장의 심사 강화 및 본회의 보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의원 윤리 행동강령 조례
개정 등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자정 노력도 함께
해왔으며, 지방분권 TF팀 구성, 특별위원회 정책팀 신설
등 지방자치 실현과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입법토론의 도입을 통한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현장소통데이 운영, 4개 지역 거점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치와 소통을 통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도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명분 없는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8월 6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보고 사과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수출 제한조치에 따라

반도체 및 전기·전자 등의 우리 도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9일은 우리 도의회의 선도적인 역할 아래 국회의원 및 5개 영남권 시·도의원 등 3백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호우 및 태풍피해가 올해는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지 않아 도민들의 시름이 줄어들었지만 찜통 같은 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가축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폭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예방대책에 총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 구성 등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일본 경제 도발 등 불안한 국제환경 속에 경기침체가 우려됩니다만 과거에 우리는 IMF를 극복한 저력이 있듯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러한 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히 다져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가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기업인들과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의정활동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9
IV. 민원처리	20
V. 본회의 보고사항	22
VI. 5분 자유발언	26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6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30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33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36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9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45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50
□ 김준열 의원(농수산위원회)	54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59

부 록

□ 조 례 안(21건)	65
□ 예 산 안(1건)	201
□ 결 의 안(1건)	205
□ 동 의 안(1건)	20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는 2019년 8월 2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2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3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1일(수) 14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월) 11시에 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 구성 등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기업인들과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며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2019년 9월 25일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9년 8월 21일 ~ 9월 2일(13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07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0	1	1	1	1	1	1	1	2	1
누 계	560	45	72	68	58	51	53	61	78	74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1(수)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건처리 ○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9. 2(월)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김준열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월) 11:00 (제2차)	○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1(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제310회 임시회 회기변경 협의 및 제311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 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락산업국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7(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2(목)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2(목)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1(수) 15:00 (제1차)	☐ 안전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나기보)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선희) 인사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9(목) 10:30 (제2차)	☐ 안전처리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락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2(월) 10:00 (제5차)	☐ 안전처리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Ⅲ. 의안처리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10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33 (303)	33 (302)	33 (302)	30 (274)	3 (26)	0 (2)	0 (0)	0 (0)	0 (1)	
조 례 안	소 계	21 (162)	21 (161)	21 (161)	18 (144)	3 (16)	0 (1)	0 (0)	0 (0)	0 (1)	
	의회 제안	16 (103)	16 (102)	16 (102)	15 (96)	1 (6)				(1)	
	도지사 제출	2 (39)	2 (39)	2 (39)	2 (31)	(8)					
	교육감 제출	3 (20)	3 (20)	3 (20)	1 (17)	2 (2)	(1)				
	규칙안	0 (2)	0 (2)	0 (2)	(2)						
예산·결산		1 (16)	1 (16)	1 (16)	1 (9)	(7)					
동의·승인		1 (33)	1 (33)	1 (33)	1 (29)	(3)	(1)				
건의안		0 (1)	0 (1)	0 (1)	(1)						
결의안		2 (29)	2 (29)	2 (29)	2 (29)						
기타안		8 (60)	8 (60)	8 (60)	8 (60)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31)	(7)		1 (2)	(5)	(1)	(1)	2 (5)	(2)	(3)
의 회 운 영										
기 회 경 제	1 (4)			1 (2)			(1)	(1)		
행 정 보건복지	(5)	(4)								(1)
문 화 환 경	2 (9)							2 (9)		
농수산	(7)	(3)							(2)	(2)
건 설 소 방	(5)				(5)					
교 육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2 (30)	2 (30)				1
의회운영						
기획경제	1 (4)	1 (4)				
행 정 보건복지	(5)	(5)				
문화환경	1 (8)	1 (8)				1
농 수 산	(7)	(7)				
건설소방	(5)	(5)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33건 (조례안 21, 예산안 1, 결의안 2, 동의안 1, 기타안 8)

2. 처리 의안 : 33건

○ 가결 의안 : 30건(조례안 18, 예산안 1, 결의안 2, 동의안 1, 기타안 8)

○ 수정가결 의안 : 3건(조례안 3)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21건(원안가결 18, 수정가결 3)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19. 8. 9.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	"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	김득환 의원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	박영환 의원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	도기욱 의원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
6	"	이종열 의원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	도지사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	조주홍 의원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	김명호 의원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
10	"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
11	"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연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2	'19. 8. 9.	임무석 의원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3	"	도지사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16	"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8	"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19	"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예 산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 수 일	제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9.8.16.	도지사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원안가결

○ 결 의 안 : 2건(원안가결 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9.2.	의회운영 위원장	경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2	'19.8.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동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8.9.	도지사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기 타 안 : 8건(원안가결 8)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8.9.	도지사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2	"	"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	'19.8.21.	의장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4	"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5	"	도지사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6	"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	"	휴회의 건	"
8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21건(도 14, 교육청 7)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226호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19. 9. 19.	
2	제4227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제4228호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제4229호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5	제4230호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	
6	제4231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4232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제4233호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9	제4234호	경상북도 불관리 기본 조례	"	
10	제4235호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	
11	제4236호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12	제4237호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13	제4238호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4	제4239호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	"	
15	제4240호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19. 9. 23.	
16	제4241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9. 23.	
17	제4242호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18	제4243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19	제4244호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20	제424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제4246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VI. 5분 자유발언

□ 2019년 8월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라 관련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도산대교 가설사업을 16년간 표류시킴으로써 45년째 고통을 감내해 온 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이철우 지사님의 관광경북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안동댐 담수가 시작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안동호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겼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유교문화의 보고였던 안동 북부지역의 저수면적 51.5㎢, 목포시 면적만한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예안면과 도산면 등 6개 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됐습니다. 졸지에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만 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27만 명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안동사람의 희생과 애환으로 저장한 물을 45년 동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왔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갈라져 살아온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km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43.8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째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경상북도는 예안면 부포리와 도산면 분천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 계획을 확정했고, 2009년에는 착공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과는 무관한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은 중단되어 표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이제 지난 16년 동안 방치해 왔던 도산대교 가설을 시두르셔서 반세기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던 도민들의 원과 한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도민의 명예와 권리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그리고 도민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게 될 것입니다. 4,000억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기이 완공된 유림문학유토피아와 선성헌문화단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과 봉정사, 한국국학진흥원 등 경북 정체성의 핵심보고가 영양·영덕·울진 등 동부지역 도민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 435억이 투입된 예안~청기터널이 2022년에 개통되고 285억이 투입된 창수터널이 2021년에 개통될 것이므로 도산대교 가설과 지방도 935호선 연결사업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산대교 가설과 지방도 935호선 연결은
45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안동시민의 한 맺힌 숙원입니다.
아울러 영양·영덕·울진 등 동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긴요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촉구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출신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온고지신,
‘옛것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올바르게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는 주민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지역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찬란한
문화를 이룬 진한의 맹주인 압독국이 지금의 경산시에 있었
다고 전하고, 1982년 경산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발굴을
통해 압독국 4백년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700여
개의 고분들로 이루어진 압독국 고분군에서는 화려한 신라
문화와 비견되는 금동관, 은제허리띠 등 2만 8,000여 점의

유물과 200여 개체의 인골자료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대국가 압독국의 문화를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임당유적전시관은 경산시의 오랜 역사를 되살려 국민에게 보여주고 올바른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경산시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역사·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현장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비 198억 원 중 국비 지원을 요청한 99억 원 또한 경상북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정체성 확립이 지방자치의 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26만인 경산시는 13개 대학에 약 8만여 명의 학생이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입니다만 그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산시의 지역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임당유적전시관은 압독국의 역사를 통해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은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인구 26만의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압독국이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산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반영 등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태춘 의원(교육전문위원회) ◎

《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관련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 내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아십니까? 이들은 아동복지 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조치가 된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하다 보니 큰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도 180명, 2017년도 166명, 2018년도 151명이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실제 보호종료 청소년들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정부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및 연장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보호종료 청소년

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경북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실제 포항이나 구미, 안동 등 도내 시·군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립 준비를 위한 자립생활관이 전국 13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경상북도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대학을 입학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나 연장보호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학금 또는 대학 생활 안정자금으로 각 시·도별로 크기는 3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되고 있으나 경상북도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통해 타 시·도의 청년들이 경북으로 오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도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추어 주거기능을 갖춘 자립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및 자산형성 관리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대기업 및 지역 기업의 1인 1사, 1인 1가정 후견인 매칭프로그램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타고난 금수저·흙수저가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인생을 만드는 경복이 되어야 합니다. 도가 먼저 나서서 보호종료 아이들을 더욱 큰 품으로 보듬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행위의 조속한 해결 촉구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지적했음에도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영풍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과 70만 톤의 황산 등을 생산하는 국내 2위 규모의 아연제련공장입니다.

아연은 생산 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풍제련소는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 배출로 환경부에 적발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50여 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오염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다 적발되기도 26일 폐수를 또다시 토양에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2019년 4월 같은 이유로

환경청에 또다시 적발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는 개선노력을 외면한 채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청문절차 연기를 시도하면서 조업연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4일 소송에는 패소하였고 청문절차는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처럼 시간을 끌기 위한 영풍제련소의 청문연기신청을 경상북도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지역의 거대기업인 영풍제련소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영풍제련소가 허가 없이 건물 15개 동과 23개 공작물을 짓고 강제이행금 14억 원을 내고 요청한 합법화에 대해서 2015년 5월 2년간 임시가동을 승인하고 2년이 되기도 전에 본 가동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영풍제련소가 보전산지지역에 18만㎡에 이르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3년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승인에 대해 보전산지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풍제련소는 또다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반려되지 않고 컨설팅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거대기업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영풍제련소는 안하무인식의 시설 확장과 산지훼손 등 불법행위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풍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가 3년간 무려 1,866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를 제기할 때마다 경상북도는 원격감시시스템과 수질측정망 설치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도, 오염물질 배출기업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도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영풍제련소에 대해 3백만 경북도민과 낙동강을 생명줄로 하는 1,300만 영남인이 이제는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에서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가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하고도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도민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지사님의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상조 의원(행복보건복지위원회) ◎

《 버스노선 관련 》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악취와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시설의 악취 관련입니다.

도내 축산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2만 6,000여 가구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2,5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사육두수가 많은 축사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축산시설 중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는 600여 가구로 2.3%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나름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축사 설치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허가할
경우 냄새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표1 축사별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민원발생 현황

한우	한우사육농가수(호)				냄새저감시설 설치현황(호)				민원발생현황(건수) 2015~2019.5월			
	계	30두 미만	30~ 50두	50두 이상	계	30두 미만	30~ 50두	50두 이상	계	30두 미만	30~ 50두	50두 이상
	21,241	14,456	2,897	3,888	202	52	43	107	658	134	189	335
돼지	돼지사육농가수(호)				냄새저감시설 설치현황(호)				민원발생현황(건수) 2015~2019.5월			
	계	1천두 미만	1~3 천두	3천두 이상	계	1천두 미만	1~3 천두	3천두 이상	계	1천두 미만	1~3 천두	3천두 이상
	749	272	341	136	302	62	163	77	1,447	204	587	656
닭	닭사육농가수(호)				냄새저감시설 설치현황(호)				민원발생현황(건수) 2015~2019.5월			
	계	10천수 미만	10~30 천수	30천수 이상	계	10천수 미만	10~30 천수	30천수 이상	계	10천수 미만	10~30 천수	30천수 이상
	4,094	3,603	97	394	93	2	14	77	366	109	65	192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경북도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 칠곡, 경산, 영천, 경주 등 6개 시·군에 총 120km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42km에 불과합니다.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의 경우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 칠곡,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에 113km를 지나고 있으나,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25km로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7개 시·군의 인구는 총 130만 명으로 도민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절반의 도민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나 고통 등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지역이나 마을이 인접한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과거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모두 시내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이 겪는 소음의 고통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서는 7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소음실태를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최소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표2 경북 도내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 통과길이 현황

시군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주민수
	통과길이	방음벽 설치길이	통과길이	방음벽 설치길이	
경주시	18.9km	0km			255,874명
영천시	18.5km	3.9km			104,161명
경산시	10.8km	4.3km	17km	3.4km	273,855명
칠곡군	24.0km,	11.3km	30km	5.7km	117,864명

시군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주민수
	통과길이	방음벽 설치길이	통과길이	방음벽 설치길이	
구미시	15.4km	12.0km	15km	6.5km	420,507명
김천시	32.1km	10.6km	24km	5.6km	141,433명
청도군			27km	4.2km	43,171명
합계	119.7km	42.1km	113km	25.4km	1,356,865명

다음은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 관련입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신뢰와 정의를 학습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간이면서 약속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교육장비와 시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도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 기준 총 11만 1,000대 중 37%에 이르는 4만 1,000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도 총 4만 9,000대 중 36%에 이르는 1만 8,000대가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차량의 경우도 임차차량을 제외한 36대의 통학 차량이 내구연한을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경북교육의 초·중·고등학생 약 40%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냉방과 난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최소한 안전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교육청은 2016년 1,200억, 2017년 870억, 2018년도 1,800억이나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이유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추계 부정확성, 준공정산 잔액,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파악됩니다

표3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주요 불용사유

(단위 : 백만 원)

회계 연도	불용액		불용사유			
			소계 (예비비+인건비)		예비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177,943	100%	100,819	56.7%	50,097	28.2%
2017	87,077	100%	51,149	58.7%	31,193	35.8%
2016	118,919	100%	56,693	47.7%	16,679	14.0%

회계 연도	불용사유					
	인건비		낙찰률 및 준공정산 잔액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50,722	28.5%	32,881	18.5%	44,243	24.9%
2017	19,956	22.9%	16,293	18.7%	19,635	22.5%
2016	40,014	33.6%	16,330	13.7%	45,896	38.6%

이것은 경북교육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산편성 시 우선성과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실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2019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악취와 소음, 그리고 경북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악취와 소음을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미애 의원(행복보건복지위원회) ◎

《 한옥형 호텔 유치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관련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동의료원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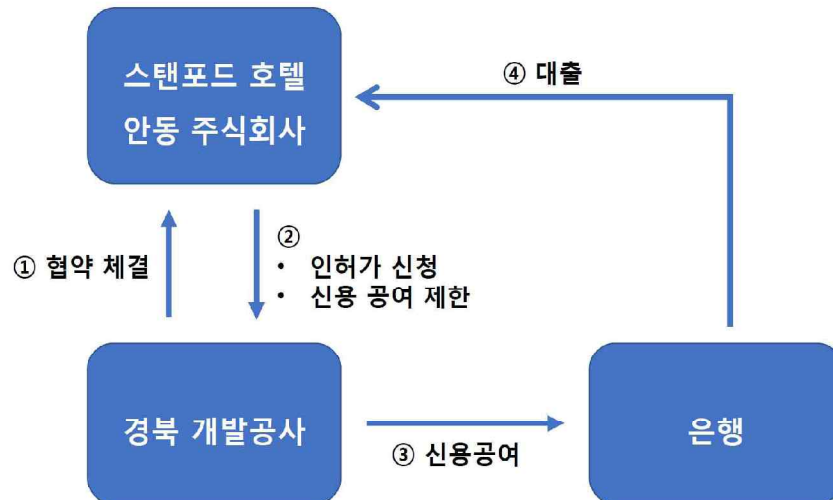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하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 5,000만 원입니다. 자본금 3억 5,000만 원의 법인에서 총사업비 450억 원의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스탠포드호텔 측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매입 잔금 58억 원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 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으로부터 320억 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 민간개발방식 대규모 사업의 채무보증 절차



경상북도에서는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탠포드 측은 경상북도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신용공여를 제안합니다.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정부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 명세

(2013년 4월 현재,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보증주체	사업비액	외부조달금액	보증금액
1	미단시티	인천도시공사	9,600	5,243	5,243
2	대양산업단지	목포시	2,909	2,899	2,899
3	진곡산업단지	광주광역시	3,046	2,800	2,800
4	여수웅천지구	여수시	5,897	2,386	2,386
5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충주시	2,242	2,300	2,300
~~~ (중 략) ~~~					
35	광영신금산업단지	광영시	1,012	428	428
36	생곡산업단지	음성군	599	420	420
37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5,329	3,500	3,500
38	남면산업단지	양주시	399	332	332
39	동두천2산업단지	동두천시	500	300	300
합계			91,493	53,449	49,322
39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 31개 사업, 지방공기업 - 5개 사업)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2013.11.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이 법적으로나 공공성 기준에 부합한지? 사업수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출자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 점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2014년 530억 원, 2016년 2,600억 원, 2017년 1,151억

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모두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약속을 믿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지금 당장 인구 2만의 도시에, 호텔에 투자하셔야 합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에 안동병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인 메디컬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안동병원의 요구대로 테마파크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지만 안동병원 측은 여전히 병원설립에 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포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여, 최대 1,06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담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동병원의 요구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안동의료원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안동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은 안동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많은 의료시설이 주변에 위치하여 굳이 의료원이 없더라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입원 병상과 수술실을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기존 안동의료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재개원 한다면 5만 8,756명(11.1%)에 이르는 치매환자와 2681여 명에 이르는 장애어린이의 의료·

재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한옥형 호텔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도시에 안동의료원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전문위원회) ◎

《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관련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 내 산업폐기물 자원재순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성 쓰레기산 모습**



작년 경북 의성군의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방치한 17만 3,000톤의 폐기물, 이른바 ‘쓰레기 산’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2019년 3월 미국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폐기물이 마을 인근에 버려져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빗물과 함께 상수원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도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약 120만 3,000톤이고, 이 중 우리 도내에 약 24%에 이르는 28만 8,000톤이 버려져 있습니다.

□ 2019년 중 21.3만 톤(행정대집행 15, 자체처리 6.3) 예정  
총사업비 : 329.3억 원(국비 211.1, 도비 36.3, 시군비 68.1, 이행보증금 13.8)

구분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비고
○ 행정대집행 (10개 시군)	구미, 영천, 상주, 문경, 의성 (5개 시군)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성주, 울진 (7개 시군)	
19년 처리(만 톤)	11.8	3.2	15.0
사업비(억 원)	303.0	26.3	329.3
○ 자체처리 (11개 시군)	구미, 영천, 군위, 성주, 울진 (5개 시군)	포항, 안동,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청송, 청도 (8개 시군)	
19년 처리(만 톤)	1.4	4.9	6.3
주관	토지소유자, 원인행위자	공공처리시설, 원인행위자	

○ 2020년 이후 : 15.8만 톤(대집행 11.6만 톤 - 약 150억 원, 자체 4.2만 톤)

□ 경상북도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

○ 처리량 : 17.3만 톤(한국환경산업개발 방치폐기물)

○ 처리방법

- '19년 : 전량선별, 처리 7.7만 톤(44.5%)
- '20년 : 처리 9.6만 톤(55.5%)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북은 다행스럽게도 국비 211억, 도비 36억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일 약 14만 6,000톤이 발생했지만 2017년

에는 16만 5,000톤으로 약 13%, 1만 9,000톤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발생량은 늘지만 처리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신규시설 설치하는 어렵고 관리 기준은 강화되어 처리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톤당 폐기물 소각비용은 26만 원, 매립비용은 14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 의성 쓰레기산 모습



이로 인한 적자 등을 이유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투기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전국 34곳의 민간 매립시설 중 10곳이 있습니다만, 정작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주, 부산 등에 이미 특화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소각·매립을 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종합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방식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열 의원(농수산전문위원회) ◎

《 아열대작물연구소 구미설립 관련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난화에 따른 경북농업의 대응방안으로 구미화훼연구소 연접 부지의 온실을 활용한 구미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농업 부문의 경우 평균기온이 1도가 오르면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80km나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지금은 제주와 남해안이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2080년경에 이르면 중부내륙지역까지 아열대기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북의 주력 소득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의 주산지가 대거 북상할 것으로 보여, 미래의 새로운 소득대체작물로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보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7년 428ha에서 2020년 1,000ha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9년 기준 아열대농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1,869농가에서 69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 20여 개 품목에서 4,086톤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구아바, 망고 등 28종의 아열대과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재배적응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 등 10개 주요 아열대작물의 소득화 최적재배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여 경주, 경산, 고령 등 10개 지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열대작물은 재배기술의 개발·보급이 더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망고 정도만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그 밖의 품목은 기초적인 재배기술만을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아열대작물의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의 농촌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열대작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아열대작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초래할 농업 부문의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대응체계의 구축과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 품종과 작목의 육성,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따른 매뉴얼 개발과 생산기술 보급의 대책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열대작물은 작물 종류가 다양하며 연구비가 많이 들고 전문연구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초래할 농업 부문의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합한 대체품종과 작목을 육성하고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따른 매뉴얼 개발과 생산기술 보급의 대책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아열대작물의 연구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 경북농업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삼연구소나 약용작물연구소처럼 아열대작물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보급하는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화훼연구단지 조감도 지도



구미화훼연구소 뒤편 부지에 3만여 평의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아열대작물연구소의 설립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미화훼연구소의 유리온실을 활용하면 연구소 설립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증재배 기능과 관광상품으로의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상주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IT도시인 구미시의 첨단기술기업이 연계하면 동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열대작물은 더 이상 낯설지도 않으며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이대로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사과를 비롯한 경북의 대표 농산물들을 재배할 수 없게 되거나 현재 경북의 대표 작물이 타 작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경북농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미화훼단지 인근 부지에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  
하여 커피 등 아열대작물이 구미와 경북을 대표하는 작물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전문위원회) ◎

《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정책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경북의 복지예산은 2018년보다 14.4% 증가한 약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북 인구의 20.3%인 약 54만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 이모작을 이야기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르신 세 분 중 한 분, 약 14만 4,000명의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끊어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만 포항·영주·울릉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목욕비 지원사업이 청결한 생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던 마을 공중목욕탕은 동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터였으며,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등을 밀어 주고 정을 나누던 동네 목욕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 욕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욕실이 없는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네 목욕탕과 혼자 몸을 씻는 가정의 욕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7개 시·군에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월 1회 어르신 목욕비 지원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도내 모든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친다면 도에서는 매년 약 43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43억 원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경북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21건)	.....	65
<input type="checkbox"/> 예	산	안( 1건)	.....	201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1건)	.....	205
<input type="checkbox"/> 동	의	안( 1건)	.....	209



##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김준열 의원('19. 8. 9)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미애 의원('19. 8. 9)
-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득환 의원('19. 8. 9)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영환 의원('19. 8. 9)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도기욱 의원('19. 8. 9)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열 의원('19. 8. 9)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8. 9)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주홍 의원('19. 8. 9)
-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김명호 의원('19. 8. 9)
-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김대일 의원('19. 8. 9)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김희수 의원('19. 8. 9)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무석 의원('19. 8. 9)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8. 9)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길 의원('19. 8. 9)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선희 의원('19. 8. 9)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우 의원('19. 8. 9)
-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영숙 의원('19. 8. 9)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19. 8. 9)
-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19. 8. 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8. 9)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8. 9)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및 노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道旗)(별표 1)
2. 심벌마크(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

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

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

7. 도민의 노래(별표 4)

제4조(도기)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  
할 수 있다.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  
(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  
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 · 인가증 · 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 철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기(道旗)(제3조제1호 관련)

1. 도기[道旗]



2.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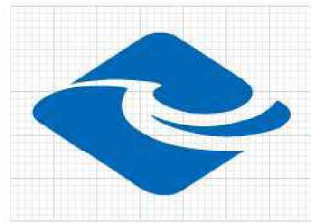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cm, 너비 80cm로 한다.
2. 도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마크는 청색으로,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실을 단다.
4.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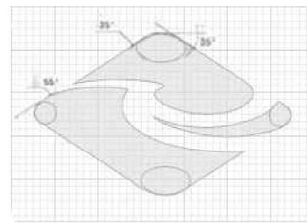
##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 1. 심벌마크

(1) 기본형



(2) 작도법(그리드)



### 2. 심벌마크의 의미

상단 일부는 장쾌하게 뻗은 신을, 오른쪽 가운데 일부는 세계로 진출하는 동해바다를, 왼쪽 하단 일부는 풍요로운 들판을, 가운데 일부는 도조인 왜가리가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과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을, 전체도형은 전통문양을 나타낸 마름모 형태로 웅도경북의 자긍심, 일체감과 진취성을 형상화 하였다.

### 3. 색상

블루(Blue)		주 색상으로 희망과 발전의 색상으로 미래의 비전을 상징
화이트(White)		보조색상으로 진화성 표현

#### 4. 시그니처 시스템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조합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에 있어서 균형과 조형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가. 시그니처 시스템은 한글, 한자, 영자 가로 조합을 기본형으로 구성했다.

나. 시그니처 각 구성요소의 비례 및 간격은 임의로 변경·조정할 수 없다.



#### 5. 휘장(徽章), 철인(鐵印)

(1) 휘장



(2) 철인



[별표 3]

브랜드 등(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브랜드		○ 지정일자 : 2007. 6. 27.     ○ 디자인 의미      -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앞서가는 역동적인 경상북도     -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힘과 도민의 자부심을 상징     - 경북의 불타는 성장에너지와 불굴의 도전정신을 표현     - Pride 서체는 경상북도의 역사적인 전통문화 가치를 상징             <b>세부인미</b>       ▶ 역사적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 _ People     ▶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나가는 곳 _ Rising     ▶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 _ Innovation     ▶ 도민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 _ Dream     ▶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북 _ Environment
도목(道木) : 느티나무		○ 도내 전지역에 분포한 뿌리가 깊은 장수목으로 척박한 토양조건에 불구하고 잘 자라며,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번영과 적응력을 상징하고, 모든 역경에서도 끈기와 저력을 과시하는 도민의 기상과 상통
도화(道花) : 백일홍		○ 도내에 고루 자생하고 있으며 화단수로 적합. 무더위에도 잘 견디는 대표적인 여름 화단의 꽃이며 척박한 토양조건에서도 잘 생육     ○ 꽃과 잎, 나무모양이 고상하고 우아함은 강건하고 생활력이 강한 경북도민의 지력과 서민적 기품이 서로 통합     ○ 현재 경주 기림사에 5-6m 백일홍이 있음
도조(道鳥) : 왜가리		○ 논, 개울, 하천 등에서 서식하며 옆구리와 배는 검은색이고 다리는 갈색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길조. 나무가 많은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 새 중에서도 몸집이 크고 모양이 품위가 있으며 평화적이어서 "용도경북" 상징

[별표 4]

도민의 노래(제3조제7호 관련)

## 도민의 노래

명랑하고 힘

작사 : 유경희    작곡 : 안종배



1. 고 - 요 한 아침햇 빛      동 해 에 번 - 저  
2. 집 - 마 다 공장마 다      남 치 는 기 -쁨  
3. 새 - 로 운 역사위 에      설 계 된 일 -터



조	- 만 년 태백산 맥	정	기 어 리 - 고
이	- 금 에 꽃이 핀 다	희	망 이 핀 - 다
금	- 쓸 러 노력하 면	번	영 이 온 - 다



낙	- 동 강	구비 구 비	기 름 전 별 - 판
도	- 시 와	농 어 촌 이	하 나 로 뭉 - 처
오	- 백 만	가 슴 마 다	쫓 는 힘 으 - 로



서 - 라 별 문화위 에 새 힘 넘 친 - 다  
영 - 남 을 끌고 가 세 밀 고 나 가 - 세  
곧 - 건 히 지켜가 세 우 리 의 향 - 토



부 르 자      우 령 차    계      도 민 의    노      래



빛 내 자 우리경복 대한 의 자 랑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회 장 수 여 대 장

번 호	증여일자	국 적	성 명	주 소	증여사유

##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lt;덧붙인 자료&gt;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  
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도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4. 그 밖의 연간 위탁금액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경상북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민간 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 간 균형분포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자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4급 이상 도 공무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5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법인 등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한다.)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및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공정성,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4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민간위탁되거나 재계약·재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되거나 재계약·재위탁되어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6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  
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출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으로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8조의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북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자금을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  
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  
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정책 수립과 중소

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 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해체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인재육성”이란 원전해체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교육전문 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3. “관련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전해체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도내 관련 산업과 연계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염·해체 및 철거 공사, 해체 폐기물 운송·저장·처분, 부지 및 환경 복원, 방사능측정 및 분석, 해체 엔지니어링 등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
2. 4차 산업, 로봇·철강·건설자재·환경 분야 등 원전해체산업 관련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재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고등

학교, 대학·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전해체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등의 사업
2. 원전해체산업 관련 해외 교류협력, 전시회, 마케팅 참여 지원 등의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문, 교육 지원 등의 사업
4. 그 밖에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 및 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원전해체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 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원전해체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 사업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등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를”을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설치,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어린이집의 유형 및”을 “필요시 어린이집의 유형과”로, “정”을 “다르게 정”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시행령이 정하는”을 “시행령 제21조의 4에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로 한다.

제7장에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28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제26조를 제31조로 한다.

제8장(제29조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제29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 앞에 “제9장 보 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 ----- -----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육료 및 제반비용) 도지사는 보육료 및 제반비용 등을 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육료 및 제반비용) ---- ----- ----- ----- 설치·운영하는 범위----- ----- ----- ----- ----- ----- 필요시 어린이집의 유형과 ---- ----- 다르게 정-----.

현행	개정안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시행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따른 -- 다음 각 호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u>장애인의 자녀</u>	4. -----  -----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9의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7장 <u>보칙</u>	제7장 <u>아동학대방지등아동의안전 확보</u>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   <u>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u>제27조(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제28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생략)	제31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u>&lt;신 설&gt;</u>	제8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u>&lt;신 설&gt;</u>	제29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u>제30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u>제9장 보 칙</u>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년 8월 27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약어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하 조문에서 시행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함(안 제20조)
-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29조)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안 제29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시행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의 입 소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 ———— ‘영유아보육 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따른 — 다음 각 호와 ————— ————.	제20조(입소우선순위) ————— ———— ————— ————— ————시행령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 애인의 자녀	4. ————— ————— ————— ———— 장애정 도에 해당하는 자 —————	3. (개정안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1형 당뇨병을 가진 경우로서 의학 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9의2. (개정안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도지시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 하여 보육교직원의 처 우가 개선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도지시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 하여 보육교직원의 처 우가 개선되도록 하여 야 한다.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를 “북한  
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2급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부 또는 단체	국가·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록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자(父子) 가정 또는 모자(母子) 가정
3	미과세대상 등록 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또는 한부모 단체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u>북한이탈수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u> 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북한이탈수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u> ————— ————— ————— ————— —————.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위임장( <u>장애등급 2급이상인 사람이</u>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3.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현행					개정안				
[별표]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순위	장에인	65세이상노인	한부모가족의모·부또는단체	국가·독립유공자및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자(父子) 가정 또는 모자(母子) 가정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장애인 등급 1~6급 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또는 이상인 자	6개월 이상의 치료상을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함은 개인공동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2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등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이행 및 개선 명령)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3장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4호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 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장·군수의 의무)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1조제2항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보고)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북도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존·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건전한 물순환) 도지사는 물이 도민의 생활 및 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생태환경의 보전) 도지사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의 배분) 도지사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물수요관리 등) ① 도지사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켜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찌물의 민물화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변화 대응)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장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등

제10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마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물 부족, 물순환계의 이상, 수질 및 수량관리, 재생수이용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법 제12조의 통합 물관리를 말한다)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에 관한 사항
3.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장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 설치 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사항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3. 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위원을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물 관리 및 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무관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5장 물문화 육성 및 지원 등

제20조(물문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물관리 지원) 도지사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물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물 관련 국제 협력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남·북한 협력은 물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사업자·관련 단체 등과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물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정보화
6. 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7.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제25조(도민 제안 등)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모두 수립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고유의 한지제조기술을 계승·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활성화
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각종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지산업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
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
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
7. 전통한지 보존

8.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와 산하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보 및 홍보물 등에 필요한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내 한지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한지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의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지 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5.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7.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8.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위탁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인삼산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인삼의 보호와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가공·유통·수출·판로지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삼산업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 ·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삼산업의 국제화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학술대회·박람회 등의 개최
3.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는 시·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도 또는 시·군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도 또는 시·군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도 또는 시·군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도 또는 시·군에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또는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 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 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 KT [ ] SKT [ ] LGU+ [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대)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유자신청 여부		[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의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의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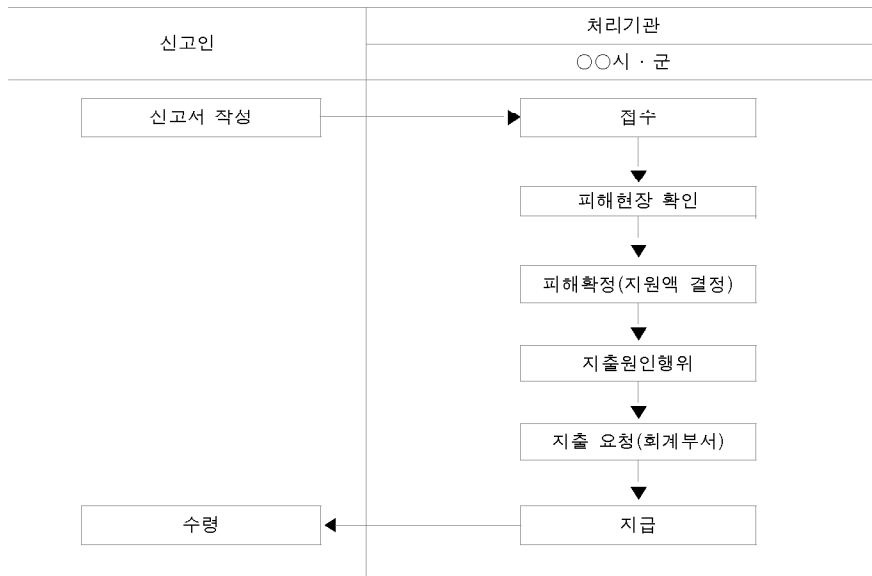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범죄  
심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계적 감시”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5.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 및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시설을 말한다.
  7. “커뮤니티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영역을 의미한다.
  8. “범죄예방협의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물리적,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성이 형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도보 및 도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
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3. 도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및 자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에 범죄예방 방법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경상북도교육감 등에게 범죄예방협의체의 참여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 · 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 단체 · 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경상북도 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유아·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미세먼지 조치사항) ①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 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校舎)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기설비 확충)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되, 학교를 신축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_____ _____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u>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7조(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u> ) ① <u>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u> 1. <u>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u> 2. <u>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u>

현 행	개 정 안
	<u>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u>   <u>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u>   <u>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8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입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7조·제8조 (생 략)</u>	<u>제9조·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u>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보건교육 전담 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상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하 “보건전문직”이라 한다)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및 보건지원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된다.

제8조(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발 요강은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년 8월 22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중
- 나. 사립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요강에 대하여 유치원 원장,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토록 선발계획 수립에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아 모집·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 중 유치원 원장,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4.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② (생   략)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_____ _____ _____ _____ 들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규정되어 있는 양은”을 “규정되지 아니한”으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일수란 중 “5”를 “10”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u>   <u>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u>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u>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u>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u>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   <u>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u>  <u>해당연도 휴직기간(월)</u>  <u>—————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u>   <u>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u>	〈삭 제〉

현행	개정안
<u>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u>   <u>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u>   <u>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u>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u>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u>	〈삭 제〉

현행	개정안
<u>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   <u>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제18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u>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u>   ④ ~ ⑧ (생략)   〈신설〉	제18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u>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u>규정되어 있는</u>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5]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u>5</u></td></tr></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u>5</u>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 <u>규정되지 아니한</u>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표5]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td><td>-</td></tr><tr><td>---</td><td>-</td></tr><tr><td>출산</td><td>----</td><td><u>10</u></td></tr></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	---	-	출산	----	<u>10</u>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u>5</u>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																					
	---	-																					
출산	----	<u>10</u>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입양	본인	20	입양	---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4제2항제1호 중 “건물과 같은 경계 안에 위치할 것”을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식음료품 (조리, 제과· 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	--------------------------------------------------------------------

26.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나)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이상 다) 오븐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소독기(살균기) 1대 이상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반죽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4)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별표 2 제27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2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45㎡이상”을 “60㎡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33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45㎡이상”을 “60㎡이상”으로, “(4인용) 6대”를 “(1인용) 10대”로, “맞사지 침대 10개”를 “침대 5개”로, “거울 10조”를 “거울 5조”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를 “컴퓨터”로 하며, 같은 표 제40호나목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5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가) 시지역 : 6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나) 읍·면지역 : 5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별표 2 제47호의 교습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 음악(전통, 서양, 실용)

별표 2 제47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가) 시지역 : 6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나) 읍·면지역 : 5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별표 2 제47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나목2)가)③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나)② 중 “현대성악 : 피아노”를 “악기”로 하며, 같은 목 2)나)③을 삭제한다.

별표 2 제49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가) 시지역 : 6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나) 읍·면지역 : 5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별표 2 제50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20조”를 “10조”로, “2조”를 “1조”로 하며, 같은 표 제51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20 세트”를 “10세트”로 한다.

별표 2 제54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의 “1)열람실 : 60㎡이상”을 “1)열람실”로 하고, 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지역 : 90㎡이상

나) 읍·면지역 : 70㎡이상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별표 2 제59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를 “컴퓨터”로 하고, 같은 표 제60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펜티엄급 이상 퍼스널컴퓨터”를 “컴퓨터”로 한다.

별표 2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 애견 미용 · 훈련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애견 훈련 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별표 2 제72호의 시설 · 설비 및 교구란 중 “회수건조기”를 “건조기”로 하고, 같은 표에 제76호 및 제7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 정보	가. 시설 1) 강의실 및 실습실 가) 시지역 : 6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나) 읍 · 면지역 : 50㎡이상(단,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0개 이상 3) 그 밖의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77. 조경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정보 분야 및 별표 2 제7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제4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면 적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 교과	입시, 보습·논술	60㎡이상	50㎡이상	
			검정고시	60㎡이상	50㎡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이상	5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이상	50㎡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별표 2와 같음		
	특수 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20㎡이상	20㎡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이상	50㎡이상	
그 밖의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별표 2와 같음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경영· 사무관리	영 제3조의3 별표 2에 의함		별표 2와 같음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무기, 축생, 축독, 경매	60㎡이상	50㎡이상	
			펜클씨, 주산	별표 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이상	50㎡이상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이상	50㎡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미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 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 2와 같음		
	※ 비고 : 0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o 보습과정에 초등학교 교과과정만 교습할 경우 면적(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은 시, 읍·면 지역 구분 없이 50㎡ 이상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u>다만,</u> <u>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 2로 정하고</u> <u>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u> <u>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반당</u> <u>기준이 별표 1의 시설규모를 넘는</u> <u>교습과정에 있어서는 별표 2를 학원의</u> <u>시설규모로 한다.</u>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 -----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 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u>건물과 같은 경계 안에</u> <u>위치할 것.</u>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② ----- ----- ----- ----- . 1. ----- ----- -----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 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년 8월 22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맞지 않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의  
“1) 열람실 : 60㎡이상”을 “1) 열람실”로 문구를 수정함.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4.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관 중 가목의 “1)  
열람실 : 60㎡이상”을 “1) 열람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비 고
<u>1) 열람실 : 60㎡이상</u> 가) 시지역 : 90㎡이상 나) 읍·면지역 : 70㎡ 이상	<u>1) 열람실</u> 가) 시지역 : 90㎡이상 나) 읍·면지역 : 70㎡ 이상	[별표 2] “56. 독서실”의 가. 시설 1) 열람실



## ▬ 예 산 안 ▬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도지사 '19. 8. 1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9,675,162,641	100.00%	9,464,161,000	100.00%	211,001,641	2.23%
일반회계	8,545,331,565	88.32%	8,338,700,000	88.11%	206,631,565	2.48%
특별회계	1,129,831,076	11.68%	1,125,461,000	11.89%	4,370,076	0.39%
기타특별회계	1,129,831,076	11.68%	1,125,461,000	11.89%	4,370,076	0.39%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92,753,150	6.13%	588,682,407	6.22%	4,070,743	0.69%
치수사업특별회계	5,580,000	0.06%	5,580,000	0.06%	0	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08,590	0.10%	10,108,590	0.11%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8,151,777	1.01%	98,001,777	1.04%	150,000	0.1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936,000	0.34%	32,936,000	0.35%	0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11,332,319	0.12%	11,332,319	0.12%	0	0.00%
소방안전특별회계	378,969,240	3.92%	378,819,907	4.00%	149,333	0.04%

##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675,162,641	100.00%	9,464,161,000	100.00%	211,001,641	2.23%
100 지방세수입	2,086,600,000	21.57%	2,086,600,000	22.05%	0	0.00%
110 지방세	2,086,600,000	21.57%	2,086,600,000	22.05%	0	0.00%
200 세외수입	228,902,991	2.37%	228,679,960	2.42%	223,031	0.10%
210 경상적세외수입	34,717,280	0.36%	34,717,280	0.37%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94,185,711	2.01%	193,962,680	2.05%	223,031	0.11%
300 지방교부세	1,341,190,800	13.86%	1,340,727,800	14.17%	463,000	0.03%
310 지방교부세	1,341,190,800	13.86%	1,340,727,800	14.17%	463,000	0.03%
500 보조금	5,061,425,285	52.31%	4,851,700,792	51.26%	209,724,493	4.32%
510 국고보조금등	5,061,425,285	52.31%	4,851,700,792	51.26%	209,724,493	4.32%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7,043,565	9.89%	956,452,448	10.11%	591,117	0.06%
710 보전수입등	186,187,820	1.92%	186,187,820	1.97%	0	0.00%
720 내부거래	770,855,745	7.97%	770,264,628	8.14%	591,117	0.08%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675,162,641	100.00%	9,464,161,000	100.00%	211,001,641	2.23%
010 일반공공행정	1,092,396,053	11.29%	1,088,337,053	11.50%	4,059,000	0.37%
020 공공질서및안전	597,084,452	6.17%	572,643,119	6.05%	24,441,333	4.27%
050 교육	102,887,170	1.06%	102,887,170	1.09%	0	0.00%
060 문화및관광	559,977,775	5.79%	554,915,154	5.86%	5,062,621	0.91%
070 환경보호	629,405,235	6.51%	519,292,707	5.49%	110,112,528	21.20%
080 사회복지	3,383,541,425	34.97%	3,344,694,649	35.34%	38,846,776	1.16%
090 보건	161,902,616	1.67%	160,745,528	1.70%	1,157,088	0.72%
100 농림해양수산	1,206,563,427	12.47%	1,178,714,360	12.45%	27,849,067	2.36%
110 산업 · 중소기업	267,045,918	2.76%	256,982,237	2.72%	10,063,681	3.92%
120 수송및교통	356,749,262	3.69%	357,094,262	3.77%	△345,000	△0.10%
140 국토및지역개발	650,158,222	6.72%	609,825,222	6.44%	40,333,000	6.61%
150 과학기술	55,544,340	0.57%	54,272,340	0.57%	1,272,000	2.34%
160 예비비	38,086,429	0.39%	89,926,075	0.95%	△51,839,646	△57.65%
900 기타	573,820,317	5.93%	573,831,124	6.06%	△10,807	0.00%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 입	지출	수 입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249,432	46,843	87,000	46,843	110,000	186,275

○ 기금운용계획세부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변경액	기정액	증감	변경내역	
				수입	지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256,275	256,275	0	· 변경내역 없음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증10,000백만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증 3,000백만원 · 경북중소기업행복자금 증10,000백만원 · 예치금 감23,000백만원



## ㉔ 결 의 안 ㉔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9. 9. 0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9. 9. 25.(수) 13:40(제1차 본회의)
  - 2019. 9. 26.(목) 14:00(제2차 본회의)
  - 2019. 10. 8.(화) 11:00(제3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 동 의 안 ＝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19. 8. 9.)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9월 2일

□ 동의안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1) 기 관 명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07. 6. 18. 개원)
- 2) 위 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외 2필지
- 3) 시설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4) 입소정원 : 90명(현원 70명)
- 5) 시설규모 : 대지면적 6,085㎡, 건축면적 952.82㎡,  
건축연면적 : 2,800.09㎡
  - 지하 1층 ~ 지상 3층(생활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회의실, 전기실, 휴게실 등)
- 6) 운영인력 : 48명
  - 공무원 : 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1, 물리치료사 1, 사무원 5)
  - 종사자 : 39명(간호사 3, 요양보호사 28, 관리인 1, 영양사 1, 조리원 3, 기타 3)

## 2. 추진개요

- 1) 위탁 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2) 수탁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3)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4) 위탁사무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5) 위탁조건 : 입소어르신 수용 및 종사자 고용승계

## 3. 그간 추진사항

- 1) 2019. 3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운영 계획 수립
- 2) 2019. 7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위탁조항 추가)
- 3) 2019. 7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수립

## 4. 향후계획

- 1) 2019. 9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 2019.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3) 2019. 11~12월 : 수탁기관 사무 및 시설물 인계·인수
- 4) 2020. 1월 :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운영 실시



# 의정활동보고서

(제310회 임시회)



2019. 9. 인쇄 / 2019. 9.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